

예 산 총 칙

2008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0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38,046,265	10,141,388
일반회계	305,702,152	9,171,065
일반회계	305,702,152	9,171,065
기타특별회계	32,344,113	970,323
상수도사업	2,403,308	72,099
하수도사업	1,374,838	41,245
수질개선	4,967,826	149,035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430,910	12,927
의료급여기금	471,938	14,158
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	505,060	15,152
기반시설	405,708	12,171
소득특화사업	6,088,102	182,643
농공단지조성사업	3,503,664	105,110
공영개발사업	2,242,312	67,269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	9,950,447	298,513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명시이월사업 변경내역은 별첨 "명시이월 변경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,044,344천원으로 하며, 예비비의 40%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 할 수 있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